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19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8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8누74862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의 소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

담당변호사 [redacted]

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8구합52969 판결

변 론 종 결 2019. 4. 19.

판 결 선 고 2019. 5. 24.

주 문

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2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19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7. 9. 13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,450,000원, 지방교육세 945,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나 관계 법령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0행(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)부터 제13면 9행까지, 제13면 제21행부터 제14면 제14행까지, 제15면 제16행부터 제27행까지를 각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다. 판단

1)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19

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,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(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). 그리고 행정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(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1두3228 판결 등 참조).

2) 앞서 살펴 본 관련 법리,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,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4%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.

가)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, 취득세는 취득행위 당시 시행되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. 따라서 취득행위 이후 개정된 지방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더 유리하더라도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소급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나)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6. 11. 30.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7호 나목, 제8호에 의하면, 부동산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농지를 제외하고는 4%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, 주택의 경우 그 가액에 따라 1~3%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바, 이는 조세를 감경하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19

다)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는 '주택'의 의미를 '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,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'라고 정의하고 있다.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, 이 사건 아파트는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의 '주택'으로 볼 수 없다.

라)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2016. 12. 27.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는 '주택'의 의미를 '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· 사용승인서 ·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,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'라고 규정하고 있으나, 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조, 제2조에 의하면 위 개정 규정은 2017. 1. 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.

원고는 구 지방세법이 조세평등원칙과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위와 같이 개정된 것이므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조, 제2조는 개정 지방세법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바,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마)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용도가 실제 주거용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, 이 사건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한 것이어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없으며, 구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기간에 취득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19

하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재영

판사 이승철

판사 김제욱